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4 - 45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점포뿐 아니라 차량에 설치한 냉장·냉동시설에서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농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 점포 경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차량에 설치한 냉장·냉동 시설에 포장육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관·판매하는 경우까지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 범위를 확대함

(안 제21조제7호)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 등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21조제7호)

다. 농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 정비(안 제31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 이메일 : nkw9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을”을 “것을”로 한다.

제21조제7호가목1) 중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을 “포장육을 해당 점포(자동차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으로 하고, 같은 목 5) 중 “식육판매업”을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한다.

제31조제5항에 제10호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9조의5 및 제9조의6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 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15의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생략)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 ----- -----.
1.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細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u>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u> 등을 말한다)	1. ----- ----- ----- <u>것을</u>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营业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7. ----- ----- 가. ----- ----- ----- -----.

_____.

1) -----

포

장육을 해당 점포(자동차
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
우에는 그 자동차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 또는 -----

2) ~ 4) (현행과 같음)

5)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오
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
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하
다)

나. ~ 바. (생략)

8. (생략)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① ~ ④ (생략)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
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
탁한다.

1. ~ 9. (생략)

<신설>

11. ~ 15. (생략)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
매가공업 -----

--

나. ~ 바.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9조의5 및 제9조의6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
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11.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16. ~ 21. (생 략)	<u>15의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 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16. ~ 21.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3) 719 - 3259